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11.21.)

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구 본 호]

목 차

1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10
3	거창군 공립어린이집(동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거창군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5.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재기재 사항 삭제
- 나. 일반적인 위임조례 형식으로 목적규정 수정함(안 제1조)
-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 범위, 공개 주기·시기·방법 등 명시(안 제2조)
- 라. 행정정보 공개대상 목록 정비(안 별표)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7. 19. ~ 8. 0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컨설팅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가. 행정정보공개는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나. 현 조례의 내용대부분이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여야 할 구체적인 정보의 범위, 공개주기, 시기, 방법 등 정보의 공표만 조례에 반영하였음

다. 별표의 정보공개목록에 있어서도 타 목록과 중복, 부존재자료,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명칭변경,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할 공개 정보 등 공표목록을 조정한 사항임

라.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관련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 현행 「거창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 등을 말한다.
2. “총괄부서(접수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집행기관”이란 군(군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거창군 조례에 따라 성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공개”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군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6.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민원봉사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행정과장이 지원·관리한다.

② 집행기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정보공개전담 창구를 지정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성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5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리 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을 줄 것을 요청하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줄 수 있다.

④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 이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며,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을 미리 정하여 군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공개범위·주기·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8조(공표방법)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보 또는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공표한다.

제9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취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집행기관 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집행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촉직 4명(외부전문가 3명, 군의원 1명)과 당연직 3명(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비밀유지 등) ① 심의회 위원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비밀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안건의 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적절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지급)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지원계획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5.

2. 요구이유

- 가. 2019. 3. 28일부터 승강기 안전인증 등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스트타워 및 관련시설로는 법적인증 업무수행에 애로

※ 승강기 부품인증 : 6종 ⇒ 20종(확대), 모델인증 7종(신설)

- 나. 승강기 안전성 확보에 집중할 수 있는 추가 인증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
- 다. 거창승강기 안전인증센터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으로 대한민국 승강기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주요내용

① (현행) 거창승강기R&D센터 부지(무상임대)

- 대상부지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72
- 면 적 : 16,531.6㎡(5,009평)
- 지원내용 : 10년 무상사용허가(근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의 4)
- 사용용도 : 현행(6종) 승강기부품 인증업무 수행 및 기업지원 진흥관 등

○ 지원대상 : 현) KTL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현황 》

- 주요기능 : 승강기 안전·인증·검사·교육기관
- 조 직 : 본원(6층 1실 1단 17부), 지역사무소(7본부, 39지사, 4출장소)
- 정 원 : 1,244명(본원 160, 지역사무소 1,084)
- ※ 거창 안전인증센터 운영인력 : 120명/ 2024년까지

② (특별지원) 승강기농공단지 부지(입지보조금 지원)

○ 대상부지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1, 2422, 2424, 2425

○ 면 적 : 18,143.9m²(5,498평)

○ 지 원 액 : 2,195,411,900원/ m²당 121,000원

○ 지원내용 : 승강기공단 『거창 승강기안전 랜드마크구축사업』에 따른 부지매입비 전액지원

○ 사용용도 : 안전인증센터, 스마트승강기기반구축, 승강기 기술교육원 등

○ 지원대상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

○ 투자계획

- 사업주체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상남도, 거창군, 경남테크노파크
- 사업위치 : 거창승강기밸리 일원
- 사업면적 : 9,000m²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6년
- 투자계획 : 120명/ 85,000백만원 투자

구 분	건축면적 (부지의 70%)	연면적 (부지의 150%)	사업기간	사업예산	운영인력	비 고
승강기 인증센터 구축	2,500m ²	5,000m ²	2019년 ~ 2023년	13,000백만원	50명	승강기 농공단지내
재난안전 스마트 승강기 기반구축	2,000m ²	6,000m ²	2020년 ~ 2024년	36,000백만원	30명	"
승강기 기술교육원 건립	2,500m ²	8,100m ²	2021년 ~ 2023년	23,000백만원	30명	"
승강기진흥관 건립	2,000m ²	3,865m ²	2021년 ~ 2023년	13,000백만원	10명	일반 산업단지내
합 계	9,000m ²	22,965m ²	2019년 ~ 2024년	85,000백만원	120명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자금지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 국가균형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 (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나. 소요예산

- 승강기산업체 입지보조금지원 : 2,195,411,900원 '19년 본예산 반영

5. 검토의견

가.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사업은 2008년 승강기대학설립을 시작으로 R&D센터, 승강기제조 및 관련 부품업체 34개소 입주 등 제반여건과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창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나. 그에 따라 대한민국 승강기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거창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도, 거창군, 경남테크노파크가 참여하여 승강기인증센터 구축 등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임

다. 현행 거창승강기 R&D센터는 KTL(한국산업기술원)에서 무상임대하여 부품인증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부품안전검사업무로 이원화 되었으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R&D센터를

무상 임대하여 위 검사를 일원화 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무상임대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단,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잔여 무상임대기간에 따른 조치가 필요>

라.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 중 승강기인증센터 구축은 승강기부품인증의 확대(6종→20종), 모델인증 신설(7종) 등이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019. 3.월부터 시행되고, 추가 사업도 계획되어 있어 동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마. 승강기안전 랜드마크 구축사업에 따른 기존 승강기 R&D센터 (테스트타워 및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됨



관련법령 발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4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④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가균형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 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거창군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공립어린이집(동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11. 2.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11. 5.

2. 요구이유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동동어린이집) 위탁기간(2014.3.5.~2019.3.4.)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보육아동		보육 교직원
		대지	연면적	층수	정원	현원	
동동어린이집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2길 19	568	239	지상1	47	26	6

나. 주요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관리
- 어린이집 시설 관리 등

다. 위탁기간 : 2019. 3. 5. ~ 2023. 3. 4.(5년)

※ 위탁 내역

- 최초 : 1999. 3. 5. ~ 2002. 3. 4.
- 2회 : 2002. 3. 5. ~ 2005. 3. 4.
- 3회 : 2005. 3. 5. ~ 2008. 3. 4.
- 4회 : 2008. 3. 5. ~ 2011. 3. 4.
- 5회 : 2011. 3. 5. ~ 2014. 3. 4.
- 6회 : 2014. 3. 5. ~ 2019. 3. 4.

라.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평가·심사 후 결정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보육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기 위함.

나.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의 2(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다. 향후계획

- 군 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8. 11월
- 재 위탁 신청 접수 : 2018. 11. 26.(월) ~ 11. 30.(금)
 - 재 위탁 신청 포기 시 변경위탁(공개모집)

- 학부모 만족도 조사 : 2018. 11. 26.(월) ~ 11. 29.(목)
-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정 : 2018년 12월
 - 재 위탁 부적격 시 변경위탁(공개모집)
-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공증 : 2019년 1월

라. 예산조치 : 비 예산

5. 검토의견

- 가. 보육 시설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증가하였고 핵가족화 및 취업모의 증가로 보육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양육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가정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참여하는 공립어린이집 증대가 요구되고 있음
- 나. 동동어린이집은 정원 47명의 보육시설로 1999년부터 위탁 운영 하여 왔으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 위탁 하려는 것임
- 다.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동동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과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투명하게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관련법령 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1.17., 2011.6.7., 2011.8.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 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단서삭제 2012.11.28)

②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관리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9>

③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수탁자의 보육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거창군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2016.9.28.)

④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1.28.후단삭제2016.9.28.)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